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 창 진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남 창 진 의원입니다.

지난 2월 6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발의취지를 말씀 드리면,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의 상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1일 자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명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과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추가하고 거주하거나 화재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과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을 추가하여 서울시 화재대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